

2010 승진형소법기출 경장[윤황채교수]1

1.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 형기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 ④ 위헌제정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2. 관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 할 수 있다.
-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③ 관련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직권 상급법원이 심판한다.

3.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 ②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 ③ 위의 ②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친고죄의 고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공범자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나머지 공범자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강간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 ③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간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간통죄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5.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②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상의 즉시고발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1통의 문서로 A·B·C의 3인을 모두 모욕한 경우에 1인의

피해자 A의 고소는 다른 피해자 B·C에 대한 모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강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인 경우에 피해자가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감금죄에 미치지 않는다.

6. 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범인이 수개의 범죄사실 중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그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 후 공범을 두둔하였다면 그 자수한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의 효력이 없다.
- ㉡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반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위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 ㉣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인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강제수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 ②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
- ③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8.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빠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흔들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 ②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 ④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들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도우미가 왔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변호인에 대해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경우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준항고를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0.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②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 ④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11.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미란다 원칙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행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를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12.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구속기간의 제한을 넘은 구속이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③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하여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그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
- ④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3. 영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의 법적 성격은 수사기관에 대한 명령장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를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 ③ 영장 제시에 있어 제시되는 영장은 정본이어야 하고, 사본의 제시는 위법하다.
- ④ 범죄사실 및 피의자, 인치구금할 장소 및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14. 체포·구속적부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 ②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피의자의 석방결정에 대

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④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5.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압수·수색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압수물건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를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 ④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 5개월이 지난 뒤 압수물 목록을 작성·교부하였어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16.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
- ② 가환부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통지 없이 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 ③ 형법 제48조(임의적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가환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 인멸, 훼손될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7. 음주운전 수사방법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 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전의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긴 하나 개인적인 차이를 무시한 것이므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불충분하다.
- ③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시부터 약2시간 후 집에 있던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 요구 당시에도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그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
- ④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18.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에서 정해 놓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 ② 현행법상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 ③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에서 구금의 장소, 변호인의 접견 등 구금에 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다.

19.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검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의 요구는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 ② 검사가 실제적 경합관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 ③ 과실범의 공소사실을 고의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만, 고의범의 공소사실을 과실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④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장의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0.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행위종료시, 상습절도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종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 ㉡ 한법재판소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예상된 시기에 이르러 공소시효가 완성되리라는 것에 대한 보장은 불확실한 기대일 뿐으로 공소시효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보호의 이익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이 경우에 공소시효를 사후에 연장·폐지하는 것은 항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 ㉢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범인이 가지는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 국외 체류 목적중의 하나라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공소사실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음란도서의 판매죄에 있어서는 그 음란성 판단의 어려움 및 그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그 도서에 게재된 도화가 음란성 있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 없이 "질", "포토스타" 등 도서가 특정되어 있으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 ② 상습사기죄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어야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다.
- ③ 조세범처벌법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의 총 매출과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각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기재되어야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다.
- ④ 문서위조죄에 있어서는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기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23. 공소제기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乙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甲에게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②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후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

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 협박을 분리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의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24. 다음 중 공판절차의 갱신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파기환송 후 원심법원이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 ②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
-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
- ④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정지사유 소멸 후 재개된 경우

25.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는 경우는?

- ①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 ② 공소장변경에 의한 법원의 공판절차정지
- ③ 기피신청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 ④ 관할이전신청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

26.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 아니므로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이를 채용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27.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 ②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 ③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

28. 【보기1】 밑줄 친 부분의 보강증거 자격과 【보기2】 밑줄 친 부분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해 보면?(판례에 의함)

【보기1】 피고인 甲은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위 조서에 대해서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며, 그것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은 甲이 직접 기재한 수첩의 기재 내용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해 뇌물자금과 기타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수첩에 기재한 바 있다.

【보기2】 乙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요폰을 투약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수회 강간하면서 약 25시간 감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였다. 법정에 출석한 乙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는 바, 이에 검찰 측은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丙을 불러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증인을 들으려 한다.

- ① 있음, 있음 ② 있음, 없음 ③ 없음, 있음 ④ 없음, 없음

29.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고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그 피의자가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30. 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판례에 의함)

①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자백

②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법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

③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이 검사 앞까지 피의자를 데려간 경우 검사 앞에서 한 자백

④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한 자백

31.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③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록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 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제1심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

②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③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

3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의 임의성을 판단하면 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고인이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증인은 선서의무가 있으나 감정인은 선서의무가 없다.

㉡ 판결을 선고한 경우, 상소기간은 판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선고해야 한다.

㉣ 책임무능력자나 어린아이, 피고인의 친인척도 모두 원칙적으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 증인의 출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소송비용의 부담과 벌금, 그리고 감치처분이 가능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몰수나 추징의 대상여부 및 추징액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간, 체중 등의 전제사실

㉢ 파산범죄에 있어서의 파산선고의 확정

㉣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그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제1심에서 별개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 추징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

②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이 구속은 위법한 구속이다.

③ 구속영장기각 재판에 대해 검사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④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38.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선고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사이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④ 판사의 유치명령이 있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39. 특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약식절차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 ②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배제법칙이나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 7일 이내의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40. 소년형사법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소년피의사건 심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검사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에서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 ④ 만 18세 미만의 소년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환형유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0년 경찰관 정기 승진시험 모범답안

계 급		윤! 경장		과 목		윤! 형소법	
1	2	3	4	5			
④	④	③	③	①			
6	7	8	9	10			
②	④	④	④	③			
11	12	13	14	15			
④	③	①	④	①			
16	17	18	19	20			
②	②	②	③	③			
21	22	23	24	25			
①	③	④	①	④			
26	27	28	29	30			
④	④	②	④	④			
31	32	33	34	35			
②	③	④	①	②			
36	37	38	39	40			
②	④	②	①	②			

윤 황 채

- 약 력
- 현 서울 국가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부산 JBS 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부산 고려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마산 중앙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울산 남부고시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인천 국가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현 경남대학교 형법특강강사
 - 현 전국 경찰형법모의고사 대표출제위원
 - 전 대구 국민경찰학원 형법대표교수
 - 전 부산 한겨레고시학원 형법강의
 - 전 서울 노량진 김재규 경찰학원 강의
 - 전 서울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강의
 - 전 대구 한교고시 학원 법원검찰 강의
 - 전 서울 종로 한교고시학원 강의
 - 전 부산 금자탐정경찰고시학원 강의
 - 전 영남이공대 경찰경호학과 강의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움 2010. 제4판]
2. PASS 핵심 경찰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6판]
3. 형법, 형소법용어해설집[도서출판 원라인 2010. 초판]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08. 개정판]
5. 형법조문과 판례[도서출판 예움 2010. 초판]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도서출판 배움 2010. 제2판]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9. 법1 검2 경3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10. 개정판]
10. 경찰형법기출문제집[도서출판 원라인 2010. 초판]

☞ 카페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gosicore@naver.com